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 7. 18 선고 2022가단2036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단체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정차범

변 론 종 결 2023. 6. 13.

판 결 선 고 2023.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B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어선에 관하여 2021. 6. 14. 체결된 이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어선에 관하여 2021. 10. 14. 체결된 이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D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어선에 관하여 2021. 10. 14.자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터잡아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대출금액
1	2018. 8. 14.	72,000,000원	2021. 8. 14.까지	80,000,000원
2	2019. 5. 30.	85,500,000원	2021. 5. 30.까지	90,000,000원
3	2020. 2. 24.	99,000,000원	2022. 2. 24.까지	110,000,000원
4	2020. 4. 13.	99,000,000원	2022. 4. 13.까지	110,000,000원
5	2020. 4. 17.	110,500,000원	2022. 4. 17.까지	130,000,000원

나. D은 E조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22. 6. 30. D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차전533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22. 7. 27. ‘D은 원고에게 454,336,470원 및 그중 452,666,037원에 대하여 2022. 7. 13.부터 2022. 8. 1.까지는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2. 8.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D은 2021. 6. 14.경 피고 B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어선(이하 ‘F’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F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락을 마쳤다.
 마. D은 2021. 10. 14.경 피고 C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어선(이하 'G'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하고 제1매매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G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락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선을 매도하였는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F의 공동담보가액 상당인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G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락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권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피고들은 D의 재산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 어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선을 정상가격에 매수하였는바,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기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D은 2022. 2.경까지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제1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년 후, 제2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22. 6. 30. D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금 채권이 성립된 점, ③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D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단순히 D의 소극재산이 그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구상금채권에 관한 발생의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다8286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임박하였다거나 구상금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피고들의 선의 여부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지만,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와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수익자는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430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D와 피고들은 같은 어촌계원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D의 채무상태를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들은 실제 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D에게 실제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선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③ 피고 B는 F를 매수한 이후 추진기를 교체하기도 하였고, 피고 C는 G에 관하여 2022. 3. 4.부터 2023. 9. 10.까지 관리선사용지정(승인)을 받아 실제 어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선의 어선원부상 별다른 권리제한사유가登記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⑤ D는 2017년경부터 전복양식업을 하기 시작하였다가 허리를 다쳐 양식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선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선에 관한 매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준

별지

목 록

1. 어선명칭 :
어선번호 :
어선의 종류 : 동력선
선 적 항 : 완도군
총 톤 수 : 1.78톤
선채재질 : FRP
기관외의 종류 · 마력 및 대수 : 가솔린선외기 기관 200.000 마력 1대
추진기의 종류와 수 : 나선일체식 추진기 1기
진수연월일 : 2005년 05월 20일
소 유 자 :

2. 어선명칭 :
어선번호 :
어선의 종류 : 동력선
선 적 항 : 완도군
총 톤 수 : 6.67톤
선채재질 : FRP
기관외의 종류 · 마력 및 대수 : 가솔린선외기 기관 250.000 마력 1대
추진기의 종류와 수 : 나선일체식 추진기 1기
진수연월일 : 2013년 09월 10일
소 유 자 :

끝.

